

심사보고서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950
----------	-----

2025. 4. 30.(수)
정책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 박지현 의원 등 8인

나. 발의일자 : 2025년 4월 11일

다. 회부일자 : 2025년 4월 14일

라. 상정일자 : 2025년 4월 22일

- 제42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박지현 의원)

가. 제안사유

-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감염병 확산 경험으로 사회 전반에 걸쳐 감염병 환자 및 병력자에 대한 차별과 낙인, 배제 현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이러한 상황에서 감염병 환자와 병력자에 대한 인권 보호와 사회적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음.

- 본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해소하고,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으며, 감염병환자등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공공보건 체계를 실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도지사 및 도민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검토보고 요지

가. 제출배경

-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대유행은 단순한 보건의료 문제를 넘어,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차별, 배제를 초래하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됨.
- 감염병 확산기에 일부 감염병환자, 병력자, 또는 단순 접촉자에게까지도 사회적 편견이 가중되었고, 이는 당사자의 사회복귀를 어렵게 하며 정신적 피해와 인권 침해로 이어짐.
- 이에 따라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 정책 마련과 더불어, 감염병환자 등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음.

- 본 조례안은 향후 발생가능한 팬데믹 상황에 대비하여 감염병 환자 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인식 개선과 사회 통합을 유도하고, 공공보건 정책의 방향성을 인권 중심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검토

-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규정으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감염병의심자를 포괄하여 “감염병환자등”으로 정의함.
- 안 제3조는 도지사의 책무에 관한 규정으로,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 수립과 도민 인식 개선을 위한 노력 등을 명시하였음.
- 안 제4조는 도민의 책무를 규정하여,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한 차별이나 불이익을 금지하고 인권 존중의 태도를 요구함.
- 안 제6조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업무 수행자 대상의 교육 및 홍보를 도지사가 실시할 수 있도록 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 적용 및 사업 추진을 도모함.
- 안 제7조는 사회복귀 지원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심리·법률 상담, 인식 개선 홍보, 기타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포함하며, 사업의 위탁 근거도 마련함.
- 안 제8조는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으로, 시·군,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력 기반을 명시함.

- 안 제9조는 포상에 관한 규정으로, 관련 공무원 및 유관 단체 등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제도 운영의 동기부여 수단으로 활용 가능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 보장을 지방정부 차원에서 제도화함으로써 감염병 이력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 해소와 복귀 지원을 도모하려는 점에서 정책적·사회적 의의가 큼.
- 다만, 선언적·권고적 성격이 강한 조례로서,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후속 세부계획 마련, 예산 편성, 민간 협력 확대 등의 실천적 기반이 필요함.
- 조례 제정으로 인권 중심의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하고, 도민 인식 개선 및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조례안은 타당하며 제정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 론 요 지 : “생략”

6.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7. 수 정 안 요 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충청북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도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환자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3호에 따른 감염병환자

나. 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감염병의사환자

다. 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병원체보유자

라. 법 제2조제15호의2에 따른 감염병의심자

2. 제1호 외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법에 따른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사회복지 지원을 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와 사회복지 관련 정보의 안내, 홍보, 충청북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도민의 인식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감염병 병력을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해서는 아니 되며, 감염병환자등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교육 및 홍보)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 및 사회복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심리상담·치료 및 법률상담 지원
2.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및 캠페인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대상자, 절차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인권보호와 사회 복귀를 위하여 시·군 및 의료기관, 민간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다.

제9조(포상) 도지사는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에 기여한 공무원, 단체 및 개인 등에게 「충청북도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 계 법 령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3.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

14. “감염병의사환자”란 감염병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한 것으로 의심이 되나 감염병환자로 확인되기 전 단계에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 “병원체보유자”란 임상적인 증상은 없으나 감염병병원체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15의2. “감염병의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및 병원체보유자(이하 “감염병환자 등”이라 한다)와 접촉하거나 접촉이 의심되는 사람(이하 “접촉자”라 한다)

나. 「검역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검역관리지역 또는 중점 검역관리지역에 체류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사람으로서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다. 감염병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되는 사람

비용추계서 첨부제외 사유서

○ 첨부제외 관련규정

-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제11조(비용추계서 작성 대상)제4항제1호

①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는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의무적, 임의적 발생비용에 대한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 방안을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작성·첨부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사 유

- 본 조례안은 감염병환자등의 인권보호 및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정의하고 있으나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됨
- 이에 「충청북도 입법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함